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법 인 **대한병원협회**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 보험(약제) 부서장

제 목 **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안내(약제)**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72호(2015.9.25)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2항 및 제3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, 제3호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69호, 2015.9.24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하여 안내합니다.

붙임 :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 개정문 1부.

※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 www.kha.or.kr /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함. 끝.

대한병원협회장



수신처

전국병원장

대리 이다미 팀장 정윤학 국장 류항수

시행 : 보험 제 2015-465 (2015.09.25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ldm@kha.or.kr